

著作権法施行規則

第一章 放送番組等のデジタル方式の複製を防止等するための措置

第一条

著作権法（以下「法」という。）第二条第一項第九号の七ハの文部科学省令で定める措置は、同号に規定する自動公衆送信が行われた放送番組又は有線放送番組を視聴する者が当該放送番組又は有線放送番組のデジタル方式の複製をするための送信元識別符号等（法第百十三条第二項に規定する送信元識別符号等をいう。第二条の六第一号において同じ。）の提供を行わない措置とする。

第一章の二 音の信号に係る接続の方法及び影像の固定に用いる光学的方法に係る基準

第一条の二（他の機器との間の音の信号に係る接続の方法）

著作権法施行令（以下「令」という。）第一条第一項の文部科学省令で定める他の機器との間の音の信号に係る接続の方法は、国際電気標準会議が放送局スタジオ用として定める音のデジタル信号の伝送方式によるものとする。

第一条の三（影像の固定に用いる光学的方法に係る基準）

令第一条第二項第四号の文部科学省令で定める基準は、標準的な室内環境において、波長が四百五ナノメートルのレーザー光を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 1 장 방송 프로그램 등의 디지털 방식 복제를 방지 등을 하기 위한 조치

제 1 조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2 조 제 1 항제 9 호의 7 의 다의 문부과학성령으로 정하는 조치는 같은 호에서 규정하는 자동공중송신이 이루어진 방송 프로그램 또는 유선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자가 해당 방송 프로그램 또는 유선방송 프로그램을 디지털 방식으로 복제하기 위한 송신처식별부호 등(법 제 113 조제 2 항에서 규정하는 송신처식별부호 등을 말한다. 제 2 조의 6 제 1 호에서 같다)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조치로 한다.

제 1 장의 2 음의 신호와 관련된 접속 방법 및 영상 고정에 사용되는 광학적 방법과 관련된 기준

제 1 조의 2 (다른 기계·기구와의 음의 신호와 관련된 접속 방법)

「저작권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 1 조제 1 항의 문부과학성령으로 정하는 다른 기계·기구와의 음의 신호와 관련된 접속 방법은 국제전기표준회의가 방송국 스튜디오용으로 정하는 음의 디지털 신호 전송방식을 따른다.

제 1 조의 3 (영상 고정에 사용하는 광학적 방법과 관련된 기준)

시행령 제 1 조제 2 항제 4 호의 문부과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표준적인 실내환경에서 파장이 405 나노미터인 레이저광을 개구수가 0.85 인 대물렌즈로 조사(照射)한다.

開口数が〇・八五の対物レンズを通して照射することとする。

第二章 司書に相当する職員

第一条の四 (司書に相当する職員)

令第一条の三第一項の文部科学省令で定める職員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で本務として図書館の専門的業務又はこれに相当する事務(以下「図書館事務」という。)に従事するものとする。

一 図書館法(昭和二十五年法律第百十八号)第四条第二項の司書となる資格を有する者

二 図書館法第四条第三項の司書補となる資格を有する者で当該資格を得た後四年以上図書館事務に従事した経験を有するもの

三 人事院規則で定める採用試験のうち、主として図書館学に関する知識、技術又はその他の能力を必要とする業務に従事することを職務とする官職を対象とするものに合格した者

四 大学又は高等専門学校を卒業した者(専門職大学の前期課程を修了した者を含む。)で、一年以上図書館事務に従事した経験を有し、かつ、文化庁長官が定める著作権に関する講習を修了したもの

五 高等学校若しくは中等教育学校を卒業した者又は高等専門学校第三学年を修了した者で、四年以上図書館事務に従事した経験を有し、かつ、文化庁長官が定める著作権に関する講習を修了したもの

第二条 (著作権に関する講習)

前条第四号及び第五号の著作権に関する講習に関し、講習の期間、履習すべき科目そ

제 2 장 사서에 해당하는 직원

제 1 조의 4 (사서에 해당하는 직원)

시행령 제 1 조의 3 제 1 항의 문부과학성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주업무로서 도서관의 전문적 사무 또는 이에 해당하는 사무(이하 “도서관 사무”라 한다)에 종사한다.

1. 「도서관법」(1950년 법률 제 118 호) 제 4 조제 2 항의 사서가 될 자격이 있는 자

2. 「도서관법」 제 4 조제 3 항의 사서보가 될 자격이 있는 자로 해당 자격을 취득하고 4 년 이상 도서관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3. 인사원 규칙으로 정하는 채용시험 중 주로 도서관학에 관한 지식, 기술 또는 그 밖의 능력이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직무의 관직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

4. 대학 또는 고등전문학교를 졸업한 자(전문직대학의 전기(前期) 과정을 수료한 자를 포함한다)로 1 년 이상 도서관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고 문화청장관이 정하는 저작권에 관한 강습을 수료한 자

5. 고등학교 또는 중등교육학교를 졸업한 자나 고등전문학교 3 학년을 수료한 자로 4 년 이상 도서관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고 문화청장관이 정하는 저작권에 관한 강습을 수료한 자

제 2 조 (저작권에 관한 강습)

① 전조 제 4 호 및 제 5 호의 저작권에 관한 강습의 강습기간, 이수과목이나 그 밖의 강

の他講習を実施するため必要な事項は、文化庁長官が定める。

2 受講者の人数、選定の方法及び講習の日時その他講習実施の細目については、毎年インターネットの利用その他の適切な方法により公表するものとする。

第二章の二 図書館資料を用いて行う公衆送信に係る著作物等の提供等を防止等するための措置等

第二条の二 (その他の登録情報)

法第三十一条第二項 (法第八十六条第三項及び第百二条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以下この章において同じ。) の文部科学省令で定める情報は、住所とする。

第二条の三 (図書館資料に係る著作物等の電磁的記録の提供等を防止等するための措置)

法第三十一条第二項第二号の文部科学省令で定める措置は、同号に規定する公衆送信を受信して作成される著作物等 (法第二条第一項第二十号に規定する著作物等をいう。以下同じ。) の複製物に当該公衆送信を受信する者を識別するための情報を表示する措置とする。

第二条の四 (公衆送信のために作成された電磁的記録に係る情報の目的外利用を防止等するための措置)

法第三十一条第三項第四号 (法第百二条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の文部科学省令で定める措置は、法第三十一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公衆送信のために作成された電磁的記録 (同項第二号に規定する電磁的記録をいう。以下この条及び第四条

습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청장관이 정한다.

② 수강 인원, 선정 방법 및 강습 일시나 그 밖의 강습 실시 관련 세부항목은 매년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공표한다.

제 2 장의 2 도서관 자료를 활용하여 실시하는 공중송신과 관련된 저작물 등의 제공 등을 방지 등을 하기 위한 조치 등

제 2 조의 2 (그 밖의 등록정보)

법 제 31 조제 2 항(법 제 86 조제 3 항 및 제 102 조제 1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문부과학성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주소로 한다.

제 2 조의 3 (도서관 자료와 관련된 저작물 등의 전자적 기록의 제공 등을 방지 등을 하기 위한 조치)

법 제 31 조제 2 항제 2 호의 문부과학성령으로 정하는 조치는 같은 호에서 규정하는 공중송신을 수신하여 작성되는 저작물 등 (법 제 2 조제 1 항제 20 호에서 규정하는 저작물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복제물에 해당 공중송신을 수신하는 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표시하는 조치로 한다.

제 2 조의 4 (공중송신을 위하여 작성된 전자적 기록과 관련된 정보의 목적 외 이용을 방지 등을 하기 위한 조치)

법 제 31 조제 3 항제 4 호(법 제 102 조제 1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문부과학성령으로 정하는 조치는 법 제 31 조제 2 항의 규정에 따른 공중송신을 위하여 작성된 전자적 기록(같은 항 제 2 호에서 규정하는 전자적 기록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の四において同じ。)の取扱いに関して次に掲げる事項を定める措置とする。

- 一 法第三十一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公衆送信のための電磁的記録の作成に係る事項
- 二 前号の電磁的記録の送信に係る事項
- 三 第一号の電磁的記録の破棄に係る事項

第二章の三 国立国会図書館と外国の施設との間の協定で定める事項

第二条の五

令第一条の六第三号の文部科学省令で定める事項は、次に掲げるものとする。

- 一 法第三十一条第七項前段(法第八十六条第三項及び第百二条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次号において同じ。)に規定する自動公衆送信により送信される絶版等資料に係る著作物等の利用を適切に行うために必要な体制の整備に関する事項
- 二 法第三十一条第七項前段に規定する自動公衆送信により送信される絶版等資料に係る著作物等の種類及び当該自動公衆送信の方法に関する事項
- 三 協定の変更又は廃止を行う場合の条件に関する事項

第二章の四 特定絶版等資料に係る著作物等のデジタル方式の複製を防止等するための措置

第二条の六

法第三十一条第八項(法第八十六条第三項及び第百二条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の文

제 4 조의 4 에서 같다)의 취급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정하는 조치로 한다.

- 1. 법 제 31 조제 2 항의 규정에 따른 공중송신을 위한 전자적 기록의 작성과 관련된 사항
- 2. 전호의 전자적 기록의 송신과 관련된 사항
- 3. 제 1 호의 전자적 기록의 파기와 관련된 사항

제 2 장의 3 국립국회도서관과 외국의 시설이 맺은 협정으로 정하는 사항

제 2 조의 5

시행령 제 1 조의 6 제 3 호의 문부과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법 제 31 조제 7 항 전단(법 제 86 조제 3 항 및 제 102 조제 1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호에서 같다)에서 규정하는 자동공중송신으로 송신하는 절판 등이 된 자료와 관련된 저작물 등을 적절히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체제 정비에 관한 사항
- 2. 법 제 31 조제 7 항 전단에서 규정하는 자동공중송신으로 송신하는 절판 등이 된 자료와 관련된 저작물 등의 종류 및 해당 자동공중송신 방법에 관한 사항
- 3. 협정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의 조건에 관한 사항

제 2 장의 4 특정 절판 등이 된 자료와 관련된 저작물 등의 디지털 방식의 복제를 방지 등을 하기 위한 조치

제 2 조의 6

법 제 31 조제 8 항(법 제 86 조제 3 항 및 제 102 조제 1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문부과학성령

部科学省令で定める措置は、次のいずれかの措置とする。

一 法第三十一条第八項に規定する自動公衆送信を受信する者が当該自動公衆送信により送信される特定絶版等資料（法第三十一条第十項に規定する特定絶版等資料をいう。次号において同じ。）に係る著作物等のデジタル方式の複製をするための送信元識別符号等の提供を行わないこと。

二 法第三十一条第八項に規定する自動公衆送信を受信して作成される特定絶版等資料に係る著作物等の複製物に当該自動公衆送信を受信する者を識別するための情報を表示し、かつ、同条第九項第一号の複製に際しその旨を示すこと。

第三章 視覚障害者等のために情報を提供する事業を行う法人の公表事項等

第二条の七（公表事項）

令第二条第一項第二号ニの文部科学省令で定める事項は、次に掲げるものとする。

一 視覚障害者等のために情報を提供する事業の内容（法第三十七条第三項（法第八十六条第一項及び第三項並びに第一百零二条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り複製又は公衆送信を行う著作物等の種類及び当該複製又は公衆送信の態様を含む。）

二 令第二条第一項第二号イからハまでに掲げる要件を満たしている旨

第二条の八（公表方法）

令第二条第一項第二号ニの規定による公表は、文化庁長官が定めるウェブサイトへの掲載により行うものとする。

으로 정하는 조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치로 한다.

1. 법 제 31 조제 8 항에서 규정하는 자동공중송신을 수신하는 자가 해당 자동공중송신으로 송신되는 특정 절판 등이 된 자료(법 제 31 조제 10 항에서 규정하는 “특정 절판 등이 된 자료”를 말한다. 다음 호에서 같다)와 관련된 저작물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복제하기 위한 송신처식별부호 등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

2. 법 제 31 조제 8 항에서 규정하는 자동공중송신을 수신하여 작성되는 특정 절판 등이 된 자료와 관련된 저작물 등의 복제물에 해당 자동공중송신을 수신하는 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표시하고, 같은 조 제 9 항제 1 호의 복제를 할 때 그 내용을 표시할 것

제 3 장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의 공표사항 등

제 2 조의 7（공표사항）

시행령 제 2 조제 1 항제 2 호의 라의 문부과 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내용[법 제 37 조제 3 항(법 제 86 조제 1 항 및 제 3 항과 제 102 조제 1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복제 또는 공중송신을 하는 저작물 등의 종류 및 해당 복제 또는 공중송신의 형태를 포함한다]

2. 시행령 제 2 조제 1 항제 2 호의 가부터 다까지의 요건을 충족한 내용

제 2 조의 8（공표방법）

시행령 제 2 조제 1 항제 2 호의 라의 규정에 따른 공표는 문화청장관이 정하는 웹사이트에 게재하여 실시한다.

第三章の二 聴覚障害者等用複製物の貸出しの基準

第二条の九

令第二条の二第一項第二号の文部科学省令で定める基準は、次のとおりとする。

一 専ら法第三十七条の二第二号の規定の適用を受けて作成された複製物（以下この条において「聴覚障害者等用複製物」という。）の貸出しを受けようとする聴覚障害者等を登録する制度を整備すること。

二 聴覚障害者等用複製物の貸出しに関し、次に掲げる事項を含む規則を定めること。

イ 聴覚障害者等用複製物の貸出しを受ける者が当該聴覚障害者等用複製物を法第三十七条の二第二号に定める目的以外の目的のために、頒布せず、かつ、当該聴覚障害者等用複製物によつて当該聴覚障害者等用複製物に係る著作物を公衆に提示しないこと。

ロ 複製防止手段（電磁的方法（法第二条第一項第二十号に規定する電磁的方法をいう。）により著作物のデジタル方式の複製を防止する手段であつて、著作物の複製に際しこれに用いられる機器が特定の反応をする信号を著作物とともに記録媒体に記録する方式によるものをいう。次号において同じ。）が用いられていない聴覚障害者等用複製物の貸出しを受ける場合に、当該貸出しを受ける者が当該聴覚障害者等用複製物を用いて当該聴覚障害者等用複製物に係る著作物を複製しないこと。

三 複製防止手段を用いていない聴覚障害者等用複製物の貸出しをする場合は、当該

제 3 장의 2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물의 대출 기준

제 2 조의 9

① 시행령 제 2 조의 2 제 1 항제 2 호의 문부 과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오로지 법 제 37 조의 2 제 2 호의 규정을 적용받아 작성된 복제물(이하 이 조에서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물”이라 한다)을 대출받으려는 청각장애인 등을 등록하는 제도를 정비할 것

2.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물 대출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규칙을 정할 것

가.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물을 대출받는 자가 해당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물을 법 제 37 조의 2 제 2 호에서 정하는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배포하지 아니하고 해당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물로 해당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물과 관련된 저작물을 공중에 제시하지 아니할 것

나. 복제 방지수단[전자적 방법(법 제 2 조 제 1 항제 20 호에서 규정하는 전자적 방법을 말한다)에 따라 저작물의 디지털 방식 복제를 방지하는 수단으로, 저작물을 복제할 때 이용하는 기계·기구가 특정 반응을 하는 신호를 저작물과 함께 기록매체에 기록하는 방식을 따른 수단을 말한다. 다음 호에서 같다]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물을 대출받는 경우, 해당 대출을 받는 자가 해당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물을 이용하여 해당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물과 관련된 저작물을 복제하지 아니할 것

3. 복제 방지수단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물을 대출하는 경

聴覚障害者等用複製物に係る著作物とともに、法第三十七条の二第二号の規定により複製を行った者の名称及び当該聴覚障害者等用複製物を識別するための文字、番号、記号その他の符号の記録（当該聴覚障害者等用複製物に係る著作物が映画の著作物である場合にあっては、当該著作物に係る影像の再生の際に併せて常に表示されるようにする記録に限る。）又は記載をして、当該貸出しを行うこと。

四 聴覚障害者等用複製物の貸出しに係る業務を適正に行うための管理者を置くこと。

2 前項の規定は、法第八十六条第一項及び第百二条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法第三十七条の二の政令で定める者に係る令第二条の二第一項第二号の文部科学省令で定める基準について準用する。

第四章 一時的固定物の保存状況の報告等

第三条 (一時的固定物の保存の状況の報告)

令第三条第一項第二号の記録保存所を設置する者（以下この章において「記録保存所の設置者」という。）は、毎事業年度の終了後一月以内に、その記録保存所において当該事業年度に保存を始めた令第三条第一項の一時的固定物について、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た書面をもつて文化庁長官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記録保存所の設置者は、当該書面に令第五条第三項の目録を添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当該一時的固定物に係る放送番組又は有線放送番組の名称

우에는 해당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물과 관련된 저작물과 함께 법 제 37 조의 2 제 2 호의 규정에 따라 복제한 자의 명칭 및 해당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물을 식별하기 위한 문자, 번호, 기호나 그 밖에 부호의 기록(해당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물과 관련된 저작물이 영화 저작물인 경우는 해당 저작물과 관련된 영상을 재생할 때 항상 함께 표시하는 기록으로 한정한다) 또는 기재하고 해당 대출을 할 것

4.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물의 대출과 관련된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한 관리자를 둘 것

② 전항의 규정은 법 제 86 조제 1 항 및 제 102 조제 1 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 37 조의 2 의 정령으로 정하는 자와 관련된 시행령 제 2 조의 2 제 1 항제 2 호의 문부과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준용한다.

제 4 장 일시적 고정물의 보존 상황 보고 등

제 3 조 (일시적 고정물의 보존 상황 보고)

① 시행령 제 3 조제 1 항제 2 호의 기록보존소를 설치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록보존소 설치자”라 한다)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1 개월 이내에 기록보존소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보존을 시작한 시행령 제 3 조제 1 항의 일시적 고정물을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문화청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보존소 설치자는 해당 서면에 시행령 제 5 조제 3 항의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일시적 고정물과 관련된 방송 프로그램 또는 유선방송 프로그램의 명칭

二 当該一時的固定物を作成した放送事業者、有線放送事業者又は放送同時配信等事業者の名称及び放送、有線放送又は放送同時配信等が行われた年月日又は期間（放送、有線放送又は放送同時配信等が行われなかつたときは、その旨）

三 当該一時的固定物がテレビジョン放送又は有線テレビジョン放送（当該テレビジョン放送の放送番組又は当該有線テレビジョン放送の有線放送番組の放送同時配信等を含む。以下この号において同じ。）のために作成されたものであるかラジオ放送又は有線ラジオ放送（当該ラジオ放送の放送番組又は当該有線ラジオ放送の有線放送番組の放送同時配信等を含む。以下この号において同じ。）のために作成されたものであるかの別（テレビジョン放送又は有線テレビジョン放送及びラジオ放送又は有線ラジオ放送のために作成されたものであるときは、その旨）

2 前項の規定によるもののほか、記録保存所の設置者は、その記録保存所において保存する令第三条第一項の一時的固定物の保存の状態について、文化庁長官が特に必要があると認めて報告を求めた場合には、その報告を求められた事項を文化庁長官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四条（業務の廃止の届出事項）

令第六条第一項の文部科学省令で定める事項は、次に掲げるものとする。

- 一 廃止を必要とする理由
- 二 廃止しようとする日
- 三 令第三条第一項の一時的固定物に関する措置

2. 해당 일시적 고정물을 작성한 방송사업자, 유선방송사업자 또는 방송동시전송 등 사업자의 명칭 및 방송, 유선방송 또는 방송동시전송 등이 이루어진 연월일 또는 기간 (방송, 유선방송 또는 방송동시전송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는 그 내용)

3. 해당 일시적 고정물이 텔레비전방송 또는 유선텔레비전방송(해당 텔레비전방송의 방송 프로그램 또는 해당 유선텔레비전방송의 유선방송 프로그램의 방송동시전송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라디오방송 또는 유선라디오 방송(해당 라디오방송의 방송 프로그램 또는 해당 유선라디오방송의 유선방송 프로그램 방송동시전송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위하여 작성되었는지의 구별 (텔레비전방송 또는 유선텔레비전방송 및 라디오 방송 또는 유선라디오방송을 위하여 작성된 것일 때는 그 내용)

② 전항의 규정에 따른 것 외에 기록보존소 설치자는 기록보존소에 보존하는 시행령 제 3 조제 1 항의 일시적 고정물의 보존 상태를 문화청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고를 요구한 경우에는 보고를 요구받은 사항을 문화청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조 (업무 폐지의 신고사항)

시행령 제 6 조제 1 항의 문부과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폐지가 필요한 이유
- 2. 폐지하려는 날
- 3. 시행령 제 3 조제 1 항의 일시적 고정물에 관한 조치

第五章 著作物の表示の大きさ又は精度に係る基準

第四条の二

令第七条の三第一号の文部科学省令で定める基準は、次に掲げるもののいずれかとする。

一 図画として法第四十七条の二（法第八十六条第一項及び第一百二条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に規定する複製を行う場合にあっては、当該複製により作成される複製物に係る著作物の表示の大きさが五十平方センチメートル以下であること。

二 デジタル方式により法第四十七条の二に規定する複製を行う場合にあっては、当該複製により複製される著作物に係る影像を構成する画素数が三万二千四百以下であること。

三 前二号に掲げる基準のほか、法第四十七条の二に規定する複製により作成される複製物に係る著作物の表示の大きさ又は精度が、同条に規定する譲渡若しくは貸与に係る著作物の原作品若しくは複製物の大きさ又はこれらに係る取引の態様その他の事情に照らし、これらの譲渡又は貸与の申出のために必要な最小限度のものであり、かつ、公正な慣行に合致するものであると認められること。

2 令第七条の三第二号イの文部科学省令で定める基準は、次に掲げるもののいずれかとする。

一 デジタル方式により法第四十七条の二（法第八十六条第三項及び第一百二条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以下この項及び次項において同じ。）に規定する公衆

제 5 장 저작물의 표시 크기 또는 정확도와 관련된 기준

제 4 조의 2

① 시행령 제 7 조의 3 제 1 호의 문부과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내용 중 어느 하나로 한다.

1. 도화로서 법 제 47 조의 2(법 제 86 조제 1 항 및 제 102 조제 1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규정하는 복제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복제로 작성되는 복제물과 관련된 저작물의 표시 크기가 50 제곱센티미터 이하일 것

2. 디지털 방식으로 법 제 47 조의 2 에서 규정하는 복제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복제로 복제되는 저작물과 관련된 영상을 구성하는 화소수가 32,400 이하일 것

3. 전 2 호의 기준 외에 법 제 47 조의 2 에서 규정하는 복제로 작성되는 복제물과 관련된 저작물의 표시 크기 또는 정확도가 같은 조에서 규정하는 양도 또는 대여와 관련된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복제물의 크기 또는 이와 관련된 거래의 형태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러한 양도 또는 대여의 신청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으로 공정한 관행에 합치한다고 인정될 것

② 시행령 제 7 조의 3 제 2 호의 가의 문부과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중 어느 하나로 한다.

1. 디지털 방식으로 법 제 47 조의 2(법 제 86 조제 3 항 및 제 102 조제 1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다음 항에서 같다)에서 규정하는 공중송신을 하

送信を行う場合にあつては、当該公衆送信により送信される著作物に係る影像を構成する画素数が三万二千四百以下であること。

二 前号に掲げる基準のほか、法第四十七条の二に規定する公衆送信を受信して行われる著作物の表示の精度が、同条に規定する譲渡若しくは貸与に係る著作物の原作品若しくは複製物の大きさ又はこれらに係る取引の態様その他の事情に照らし、これらの譲渡又は貸与の申出のために必要な最小限度のものであり、かつ、公正な慣行に合致するものであると認められること。

3 令第七条の三第二号ロの文部科学省令で定める基準は、次に掲げるもののいずれかとする。

一 デジタル方式により法第四十七条の二に規定する公衆送信を行う場合にあつては、当該公衆送信により送信される著作物に係る影像を構成する画素数が九万以下であること。

二 前号に掲げる基準のほか、法第四十七条の二に規定する公衆送信を受信して行われる著作物の表示の精度が、同条に規定する譲渡若しくは貸与に係る著作物の原作品若しくは複製物の大きさ又はこれらに係る取引の態様その他の事情に照らし、これらの譲渡又は貸与の申出のために必要と認められる限度のものであり、かつ、公正な慣行に合致すると認められるものであること。

第六章 削除

第四条の三 削除

는 경우에는 해당 공중송신으로 송신되는 저작물과 관련된 영상을 구성하는 화소수가 32,400 이하일 것

2. 전호의 기준 외에 법 제 47 조의 2 에서 규정하는 공중송신을 수신하여 실시하는 저작물의 표시 정확도가 같은 조에서 규정하는 양도 또는 대여와 관련된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복제물의 크기 또는 이와 관련된 거래의 형태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러한 양도 또는 대여의 신청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공정한 관행에 합치한다고 인정될 것

③ 시행령 제 7 조의 3 제 2 호의 나의 문부 과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내용 중 어느 하나로 한다.

1. 디지털 방식으로 법 제 47 조의 2 에서 규정하는 공중송신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중송신으로 송신하는 저작물과 관련된 영상을 구성하는 화소수가 90,000 이하일 것

2. 전호의 기준 외에 법 제 47 조의 2 에서 규정하는 공중송신을 수신하여 이루어지는 저작물의 표시 정확도가 같은 조에서 규정하는 양도 또는 대여와 관련된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복제물의 크기 또는 이와 관련된 거래의 형태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러한 양도 또는 대여의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의 것으로 공정한 관행에 합치한다고 인정될 것

제 6 장 삭제

제 4 조의 3 삭제

第七章 電子計算機による情報処理及びその結果の提供等を適正に行うために必要な措置

第四条の四 (送信元識別符号検索結果提供を適正に行うために必要な措置)

令第七条の四第一項第一号ロの文部科学省令で定める措置は、次に掲げる行為のいずれかが送信元識別符号検索結果提供を目的とする情報の収集を禁止する措置に係る一般の慣行に従って行われている場合にあっては、当該行為に係る情報の提供を行わないこととする。

一 robots.txtの名称の付された電磁的記録で送信可能化されたものに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すること。

イ 送信元識別符号検索結果提供を目的とする情報の収集のためのプログラムのうち情報の収集を禁止するもの

ロ 送信元識別符号検索結果提供を目的とする情報の収集において収集を禁止する情報の範囲

二 HTML (送信可能化された情報を電子計算機による閲覧の用に供するに当たり、当該情報の表示の配列その他の態様を示すとともに、当該情報以外の情報で送信可能化されたものの送信の求めを簡易に行えるようにするための電磁的記録を作成するために用いられる文字その他の記号及びその体系であつて、国際的な標準となつていものをいう。第二十五条において同じ。) その他これに類するもので作成された電磁的記録で送信可能化されたものに送信元識別符号検索結果提供を目的とする情報の収集を禁止する旨を記載すること。

제 7 장 컴퓨터에 의한 정보처리 및 그 결과를 적정하게 제공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 4 조의 4 (송신처식별부호 검색 결과를 적정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시행령 제 7 조의 4 제 1 항제 1 호의 나의 문부과학성령으로 정하는 조치는 다음의 행위 중 어느 하나가 송신처식별부호 검색 결과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의 수집을 금지하는 조치와 관련된 일반 관행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1. robots.txt 명칭이 붙은 전자적 기록으로 송신가능화된 것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할 것

가. 송신처식별부호 검색 결과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의 수집을 위한 프로그램 중 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것

나. 송신처식별부호 검색 결과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의 수집에서 수집을 금지하는 정보의 범위

2. HTML(송신가능화된 정보를 컴퓨터 열람용으로 이용할 때 해당 정보의 표시 배열이나 그 밖의 상태를 표시하고 해당 정보 외의 정보로 송신가능화된 것의 송신 요구를 간단히 할 수 있는 전자적 기록을 작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문자나 그 밖의 기호 및 그 체계로, 국제 표준이 된 것을 말한다. 제 25 조에서 같다)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작성된 전자적 기록으로 송신가능화된 것에 송신처식별부호 검색 결과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의 수집을 금지하는 내용을 기재할 것

第四条の五（著作物等の利用を適正に行うために必要な措置）

令第七条の四第一項第三号の文部科学省令で定める措置は、業として法第四十七条の五第一項（法第八十六条第一項及び第三項並びに第百二条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一号において同じ。）各号に掲げる行為を行う場合にあっては、次に掲げる措置を講ずることとする。

一 当該行為に係る著作物等の利用が法第四十七条の五第一項に規定する要件に適合するものとなるよう、あらかじめ、当該要件の解釈を記載した書類の閲覧、学識経験者に対する相談その他の必要な取組を行うこと。

二 当該行為に関する問合せを受けるための連絡先その他の情報を、当該行為の態様に応じ合理的と認められる方法及び程度により明示すること。

第八章 登録手続等

第一節 著作権登録原簿の調製方法等

第五条（著作権登録原簿等の調製方法）

次の各号に掲げる著作権登録原簿、出版権登録原簿又は著作隣接権登録原簿（以下「著作権登録原簿等」と総称する。）は、それぞれに記録されている事項を記載した書類（以下「登録事項記載書類」という。）をそれぞれ当該各号に定める様式により作成できるように調製する。

一 著作権登録原簿（次号に掲げる著作権登録原簿を除く。）及び出版権登録原簿別記様式第一

제 4 조의 5 (저작물 등을 적정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시행령 제 7 조의 4 제 1 항제 3 호의 문부과학성령으로 정하는 조치는 업으로서 법 제 47 조의 5 제 1 항(법 제 86 조제 1 항 및 제 3 항과 제 102 조제 1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 1 호에서 같다)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강구한다.

1. 해당 행위와 관련된 저작물 등의 이용이 법 제 47 조의 5 제 1 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적합하도록 미리 해당 요건의 해석을 기재한 서류의 열람,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에 대한 상담이나 그 밖의 필요한 활동을 실시할 것

2. 해당 행위에 관한 문의를 받기 위한 연락처나 그 밖의 정보를 해당 행위의 형태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및 정도로 명시할 것

제 8 장 등록절차 등

제 1 절 저작권등록원부의 작성 방법 등

제 5 조 (저작권등록원부의 작성 방법)

다음 각 호의 저작권등록원부, 출판권등록원부 또는 저작인접권등록원부(이하 “저작권등록원부 등”이라 한다)는 각각에 기록된 사항을 기재한 서류(이하 “등록사항기재서류”라 한다)를 각각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든다.

1. 저작권등록원부(다음 호의 저작권등록원부를 제외한다) 및 출판권등록원부: 별표 양식 1

二 プログラムの著作物に係る著作権登録原簿 別記様式第一の二

三 著作隣接権登録原簿 別記様式第二

第六条 (附属書類)

令第十三条第二項の附属書類として、文化庁に登録受付簿を置く。

第一節の二 申請の手續

第七条 (書面の用語等)

申請書及び令第二十一条第二項各号の書面は、日本語で書か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書面以外の資料であつて、外国語で書いたものには、その翻訳文を添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八条 (申請書等の様式)

法第七十五条第一項の登録の申請書は別記様式第三により、法第七十六条第一項の登録の申請書は別記様式第四により、法第七十六条の二第一項の登録の申請書は別記様式第五により、法第七十七条の登録の申請書は別記様式第六(相続又は法人の合併による権利の移転の登録の申請にあつては、別記様式第六の二)により、法第八十八条第一項の登録の申請書は別記様式第七(相続又は法人の合併による権利の移転の登録の申請にあつては、別記様式第七の二)により、法第一百四条の登録の申請書は別記様式第八(相続又は法人の合併による権利の移転の登録の申請にあつては、別記様式第八の二)により作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令第二十一条第二項第一号の書面は別記様式第九により、同項第二号の書面は別記様式第十により、同項第三号の書面は別記様式第十一により、同項第四号及び第五号の書面は別記様式第十二により作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프로그램 저작물과 관련된 저작권등록원부: 별표 양식 1 의 2

3. 저작인접권등록원부: 별표 양식 2

제 6 조 (부속서류)

시행령 제 13 조제 2 항의 부속서류로 문화청에 등록접수부를 둔다.

제 1 절의 2 신청절차

제 7 조 (서면의 용어 등)

① 신청서 및 시행령 제 21 조제 2 항 각 호의 서면은 일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서면 외 자료로서 외국어로 작성한 자료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8 조 (신청서 등의 양식)

① 법 제 75 조제 1 항의 등록신청서는 별표 양식 3, 법 제 76 조제 1 항의 등록신청서는 별표 양식 4, 법 제 76 조의 2 제 1 항의 등록신청서는 별표 양식 5, 법 제 77 조의 등록신청서는 별표 양식 6(상속 또는 법인 합병에 따른 권리 이전의 등록 신청은 별표 양식 6 의 2), 법 제 88 조제 1 항의 등록신청서는 별표 양식 7(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에 따른 권리 이전의 등록 신청은 별표 양식 7 의 2), 법 제 104 조의 등록신청서는 별표 양식 8(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에 따른 권리 이전의 등록 신청은 별표 양식 8 의 2)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행령 제 21 조제 2 항제 1 호의 서면은 별표 양식 9, 같은 항 제 2 호의 서면은 별표 양식 10, 같은 항 제 3 호의 서면은 별표 양식 11, 같은 항 제 4 호 및 제 5 호의 서면은 별표 양식 12 로 작성하여야 한다.

第二節 登録の手續

第九条 (登録受付簿の記載)

申請書の提出があつたときは、登録受付簿に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するとともに、当該申請書に第一号及び第二号に掲げる事項を記載する。

一 申請の受付の年月日

二 受付番号

三 著作物の題号又は実演等(実演、レコード、放送番組又は有線放送番組をいう。第十一条第二項第一号において同じ。)の名称

四 著作者、実演家、レコード製作者、放送事業者若しくは有線放送事業者の氏名又は名称

五 登録の目的

六 登録免許税として納付する額

七 申請者の氏名又は名称

2 前項第二号の受付番号は、受付の順序により付す。

3 第一項の規定により登録受付簿に申請者の氏名又は名称を記載する場合において、申請者が二人以上あるときは、申請書に掲げた代表者又は筆頭者の氏名又は名称及び他の申請者の数を記載するだけで足りる。

第十条 (受付番号の更新)

受付番号は、毎年更新する。

第十一条 (表示部等の登録の方法)

著作権登録原簿等は、表示部、事項部及び信託部(次項において「表示部等」という。)の別に記録する。

2 表示部等についての登録は、次の各号に掲げる部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掲げる事項を記録して行う。

제 2 절 등록절차

제 9 조 (등록접수부 기재)

①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는 등록접수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해당 신청서에 제 1 호 및 제 2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신청 접수 연월일

2. 접수번호

3. 저작물의 표제 또는 실연 등(실연, 음반, 방송 프로그램 또는 유선방송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 11 조제 2 항제 1 호에서 같다)의 명칭

4. 저작자, 실연가,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나 유선방송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5. 등록 목적

6. 등록면허세로 납부하는 금액

7.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

② 전항 제 2 호의 접수번호는 접수 순서에 따라 부여한다.

③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접수부에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하는 경우, 신청자가 둘 이상일 때는 신청서의 대표자 또는 필두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다른 신청자의 수만 기재하면 된다.

제 10 조 (접수번호의 갱신)

접수번호는 매년 갱신한다.

제 11 조 (표시부 등의 등록 방법)

① 저작권등록원부 등은 표시부, 사항부 및 신탁부(다음 항에서 “표시부 등”이라 한다) 별로 기록한다.

② 표시부 등의 등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실시한다.

一 表示部 申請書に掲げた事項のうち著作物の題号又は実演等の名称及び申請書に添付した令第二十一条第二項各号のいずれかの書面に掲げた事項（プログラムの著作物に係る著作権登録原簿にあつては、同項第一号イに規定する事項を除く。）

二 事項部 次に掲げる事項

イ 申請書に掲げた事項のうち令第二十条各号（第三号及び第七号を除く。）の事項

ロ 申請書に掲げた事項のうち令第二十七条若しくは第二十八条に規定する事項又は登録すべき権利に関する事項

ハ 第九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申請書に記載した同項第一号及び第二号に掲げる事項
三 信託部 前号に掲げる事項及び申請書に掲げた事項のうち令第三十六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事項

3 令第二十九条又は第三十七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申請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著作権登録原簿等の事項部又は信託部に登録するときは、前項第二号又は第三号の事項のほか、債権者又は受益者若しくは委託者の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又は居所並びに代位の原因を記録する。

第十二条 (準用)

申請による登録の手續に関する第九条から前条までの規定は、囑託による登録の手續について準用する。

第十三条 (表示番号等の記録)

著作権登録原簿等について、表示部に最初に登録したときは、当該登録事項を記録した順序により表示番号を記録する。

2 著作権登録原簿等について、事項部又は信託部に登録したときは、その登録が民事保全法（平成元年法律第九十一号）第五十四条において準用する同法第五十三条第

1. 표시부: 신청서 사항 중 저작물의 표제 또는 실연 등의 명칭 및 신청서에 첨부한 시행령 제 21 조제 2 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서면에 제시된 사항(프로그램의 저작물과 관련된 저작권등록원부는 같은 항 제 1 호의 가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2. 사항부: 다음의 사항

가. 신청서 사항 중 시행령 제 20 조 각 호 (제 3 호 및 제 7 호를 제외한다)의 사항

나. 신청서 사항 중 시행령 제 27 조 또는 제 28 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이나 등록하여야 할 권리에 관한 사항

다. 제 9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에 기재한 같은 항 제 1 호 및 제 2 호의 사항

3. 신탁부: 전호의 사항 및 신청서 사항 중 시행령 제 36 조제 1 항 각 호의 사항

③ 시행령 제 29 조 또는 제 37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된 경우에 저작권등록원부 등의 사항부 또는 신탁부에 등록할 때는 전항 제 2 호 또는 제 3 호의 사항 외에 채권자 또는 수익자나 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또는 소재지와 대위의 원인을 기록한다.

제 12 조 (준용)

신청에 따른 등록절차에 관한 제 9 조부터 전조까지의 규정은 촉탁에 따른 등록절차에 준용한다.

제 13 조 (표시번호 등의 기록)

① 저작권등록원부 등을 표시부에 처음 등록했을 때는 해당 등록사항을 기록한 순서에 따라 표시번호를 기록한다.

② 저작권등록원부 등을 사항부 또는 신탁부에 등록했을 때는 그 등록이 「민사보전법」(1989년 법률 제 91 호) 제 54 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 53 조제 2 항의 규정에

二項の規定による仮処分による仮登録（以下「保全仮登録」という。）をしたものについての本登録である場合及び保全仮登録の抹消の登録である場合を除き、当該登録事項を記録した順序により順位番号を当該登録事項を記録する部分の前に記録する。

第十四条（変更された登録事項等の抹消の方法）

著作権登録原簿等について変更又は更正の登録をしたときは、変更され、又は更正された登録事項について抹消記号を記録する。

第十五条（登録の抹消の方法）

著作権登録原簿等について抹消の登録をするときは、備考欄に抹消すべき登録を抹消する旨を記録した後、当該登録について抹消記号を記録する。

2 前項の場合において、抹消に係る権利を目的とする第三者の登録があるときは、備考欄に当該抹消に係る権利の登録を抹消することによりその登録を抹消する旨を記録した後、当該登録について抹消記号を記録する。

第十六条（回復の登録の方法）

著作権登録原簿等について回復の登録をするときは、備考欄に抹消に係る登録を回復する旨を記録した後、当該登録と同一の登録をする。

第十七条（登録年月日の記録等）

著作権登録原簿等について職権により登録したときは、登録の原因及びその発生日並びに登録すべき権利に関する事項欄に当該登録の年月日を記録する。

2 文化庁長官が指定する職員は、著作権登録原簿等について登録したときは、登録

다른 가치분의 가등록(이하 “보전가등록”이라 한다)에 관한 본등록인 경우 및 보전가등록의 말소등록인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등록사항을 기록한 순서에 따라 순위번호를 해당 등록사항을 기록하는 부분 앞에 기록한다.

제 14 조 (변경된 등록사항 등의 말소 방법)

저작권등록원부 등을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을 했을 때는 변경 또는 경정된 등록사항의 말소기호를 기록한다.

제 15 조 (등록의 말소 방법)

① 저작권등록원부 등을 말소의 등록을 할 때는 비고란에 말소하여야 할 등록을 말소하는 내용을 기록한 후 해당 등록의 말소기호를 기록한다.

② 전항의 경우, 말소와 관련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삼자의 등록이 있을 때는 비고란에 해당 말소와 관련된 권리의 등록을 말소함으로써 그 등록을 말소한다는 내용을 기록한 후 해당 등록의 말소기호를 기록한다.

제 16 조 (회복의 등록 방법)

저작권등록원부 등을 회복의 등록을 할 때는 비고란에 말소와 관련된 등록을 회복한다는 내용을 기록한 후 해당 등록과 동일한 등록을 한다.

제 17 조 (등록 연월일의 기록 등)

① 저작권등록원부 등을 직권으로 등록했을 때는 등록의 원인 및 발생 연월일과 등록하여야 할 권리에 관한 사항란에 해당 등록의 연월일을 기록한다.

② 문화청장관이 지정하는 직원은 저작권등록원부 등을 등록했을 때는 등록사항 기재서류를 작성하고 등록을 확인하여야 한다.

事項記載書類を作成し、登録の確認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第十八条 (分界)

著作権登録原簿等について登録したときは、備考欄に続けて分界記号を記録する。

第十八条之二 (保全仮登録の方法等)

著作権登録原簿等について保全仮登録をするときは、事項部に登録をする。

第十八条之三

出版権の設定又は変更について、著作権登録原簿について民事保全法第五十四条において準用する同法第五十三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仮処分の登録（以下この条において「仮処分の登録」という。）をするとともに出版権登録原簿について保全仮登録をするときは、第十一条第二項第二号に掲げる事項のほか、次の各号に掲げる部には当該各号に掲げる事項を記録する。

一 著作権登録原簿の事項部 当該仮処分の登録とともに出版権登録原簿に保全仮登録をする旨並びに当該保全仮登録の表示番号及び順位番号

二 出版権登録原簿の事項部 当該保全仮登録とともに著作権登録原簿に仮処分の登録をする旨並びに当該仮処分の登録の表示番号及び順位番号

第十八条之四 (保全仮登録後の本登録等)

著作権登録原簿等について保全仮登録をした後本登録の申請があつたときは、保全仮登録の次にその登録をする。保全仮登録の抹消の嘱託があつたときも、同様とする。

第三節 登録事項記載書類の交付手続等

第十九条 (登録事項記載書類の交付申請手続等)

제 18 조 (분계)

저작권등록원부 등을 등록했을 때는 비고란에 이어서 분계기호를 기록한다.

제 18 조의 2 (보전가등록의 방법 등)

저작권등록원부 등을 보전가등록할 때는 사항부에 등록한다.

제 18 조의 3

출판권의 설정 또는 변경은 저작권등록원부를 「민사보전법」 제 54 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 53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가처분의 등록(이하 이 조에서 “가처분의 등록”이라 한다)을 하고 출판권등록원부를 보전가등록할 때는 제 11 조제 2 항제 2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부에는 해당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다.

1. 저작권등록원부의 사항부: 해당 가처분의 등록과 함께 출판권등록원부에 보전가등록을 한다는 내용과 해당 보전가등록의 표시번호 및 순위번호
2. 출판권등록원부 사항부: 해당 보전가등록과 함께 저작권등록원부에 가처분 등록을 한다는 내용과 해당 가처분의 등록 표시번호 및 순위번호

제 18 조의 4 (보전가등록 후의 본등록 등)

저작권등록원부 등을 보전가등록한 후 본등록 신청이 있을 때는 보전가등록 다음에 그 등록을 한다. 보전가등록의 말소 촉탁이 있을 때도 같다.

제 3 절 등록사항 기재서류의 발급절차 등

제 19 조 (등록사항 기재서류의 발급 신청절차 등)

登録事項記載書類の交付又は著作権登録原簿等の附属書類の写しの交付若しくは閲覧を請求しようとする者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た申請書を文化庁長官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登録番号（著作権登録原簿等の附属書類の写しの交付又は閲覧を請求するときは、申請の受付の年月日及び受付番号）
- 二 申請者の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又は居所並びに法人にあつては代表者の氏名
- 三 登録事項記載書類又は著作権登録原簿等の附属書類の写しの交付を請求するときは、その部数

第二十条（登録事項記載書類の作成方法）

登録事項記載書類に余白があるときは、その部分に余白である旨を記載する。

2 登録事項記載書類には、作成の年月日並びに記載事項が著作権登録原簿等に記録されている事項と相異がない旨及び文化庁長官の文字を記載し、これに文化庁長官の印を押す。

第九章 業務規程の記載事項

第二十条の二（指定報酬管理事業者等の報酬等関係業務に係る業務規程の記載事項）

令第四十五条の三第二項の業務規程で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事項は、次に掲げるものとする。

- 一 法第九十三条の三第二項の報酬（以下この条において「報酬」という。）又は法第九十四条の三第二項若しくは第九十六条の三第二項の補償金を受ける権利を行使する業務又は法第九十四条第一項の補償金を受領する業務に要する手数料に関する事項

등록사항 기재서류의 발급 또는 저작권등록원부 등 부속서류 사본의 발급이나 열람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문화청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등록번호(저작권등록원부 등 부속서류 사본의 발급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는 신청 접수 연월일 및 접수번호)
- 2.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또는 소재지, 법인일 때는 대표자의 성명
- 3. 등록사항 기재서류 또는 저작권등록원부의 부속서류 사본의 발급을 청구할 때는 그 부수

제 20 조 (등록사항 기재서류의 작성 방법)

① 등록사항 기재서류에 여백이 있을 때는 그 부분이 여백임을 기재한다.

② 등록사항 기재서류에는 작성 연월일과 기재사항이 저작권등록원부 등에 기록된 사항과 다르지 아니하다는 내용 및 문화청장관의 글자를 기재하고 문화청장관의 직인을 찍는다.

제 9 장 업무규정의 기재사항

제 20 조의 2 (지정 보수관리사업자 등의 보수 등과 관련된 업무에 관한 업무규정의 기재사항)

시행령 제 45 조의 3 제 2 항의 업무규정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법 제 93 조의 3 제 2 항의 보수(이하 이 조에서 “보수”라 한다) 또는 법 제 94 조의 3 제 2 항이나 제 96 조의 3 제 2 항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업무 또는 법 제 94 조제 1 항의 보상금을 수령하는 업무에 필요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

二 報酬又は法第九十四条第一項、第九十四条の三第二項若しくは第九十六条の三第二項の補償金（次号において「補償金」という。）の分配方法に関する事項

三 報酬又は補償金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以下この号において「権利者」という。）の不明その他の理由により、権利者と連絡することができず、報酬又は補償金の分配を行うことができなかつた場合における報酬又は補償金の取扱い

第二十一条（指定団体の二次使用料関係業務に係る業務規程の記載事項）

令第四十七条第二項の業務規程で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事項は、次に掲げるものとする。

一 法第九十五条第一項又は第九十七条第一項の二次使用料（以下この条において「二次使用料」という。）を受ける権利を行使する権限の受任に関する事項

二 二次使用料を受ける権利を行使する業務に要する手数料に関する事項

三 二次使用料の分配方法に関する事項

第二十二条（指定団体の報酬等関係業務に係る業務規程の記載事項）

令第五十七条の三において準用する令第四十七条第二項の業務規程で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事項は、次に掲げるものとする。

一 法第九十五条の三第三項又は第九十七条の三第三項の報酬（以下この条において「報酬」という。）及び法第九十五条の三第五項又は第九十七条の三第六項の使用料（以下この条において「使用料」という。）を受ける権利を行使する権限の受任に関する事項

二 報酬及び使用料を受ける権利を行使する業務に要する手数料に関する事項

2. 보수 또는 법 제 94 조제 1 항, 제 94 조의 3 제 2 항이나 제 96 조의 3 제 2 항의 보상금(다음 호에서 “보상금”이라 한다) 분배 방법에 관한 사항

3. 보수 또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이 호에서 “권리자”라 한다)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권리자와 연락할 수 없어 보수 또는 보상금을 분배할 수 없는 경우 보수 또는 보상금의 취급

제 21 조 (지정 단체의 2 차 사용료와 관련된 업무에 관한 업무규정의 기재사항)

시행령 제 47 조제 2 항의 업무규정으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 95 조제 1 항 또는 제 97 조제 1 항의 2 차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2 차 사용료”라 한다)를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권한의 수임에 관한 사항

2. 2 차 사용료를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업무에 필요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

3. 2 차 사용료의 분배 방법에 관한 사항

제 22 조 (지정 단체의 보수 등과 관련된 업무에 관한 업무규정의 기재사항)

시행령 제 57 조의 3 에서 준용하는 시행령 제 47 조제 2 항의 업무규정으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 95 조의 3 제 3 항 또는 제 97 조의 3 제 3 항의 보수(이하 이 조에서 “보수”라 한다) 및 법 제 95 조의 3 제 5 항 또는 제 97 조의 3 제 6 항의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라 한다)를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권한 수임에 관한 사항

2. 보수 및 사용료를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업무에 필요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

三 報酬及び使用料の分配方法に関する事項

第十章 私的録音録画補償金の額の認可申請等

第二十二條の二 (私的録音録画補償金の額の認可の申請)

法第百四條の二第一項に規定する指定管理団体は、法第百四條の六第一項の規定により私的録音録画補償金(法第百四條の二第一項の私的録音録画補償金をいう。以下この章において同じ。)の額の設定又は変更の認可を受けようとするとき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た申請書を文化庁長官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名称及び住所並びに代表者の氏名
- 二 設定又は変更の認可を受けようとする私的録音録画補償金の額及びその算定の基礎となるべき事項

三 法第百四條の六第三項の規定により製造業者等の団体から意見を聴取したときは、その概要

第二十二條の三 (補償金関係業務に係る業務規程の記載事項)

令第五十七條の五第二項の業務規程で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事項は、次に掲げるものとする。

- 一 私的録音録画補償金を受ける権利を行使する業務に要する手数料に関する事項
- 二 文化庁長官の認可を受けた私的録音録画補償金の額の公示に関する事項

第十章の二 図書館等公衆送信補償金の額の認可申請等

3. 보수 및 사용료의 분배 방법에 관한 사항

제 10 장 사적 녹음·녹화보상금액의 인가 신청 등

제 22 조의 2 (사적 녹음·녹화보상금액의 인가 신청)

법 제 104 조의 2 제 1 항에서 규정하는 지정 관리단체는 법 제 104 조의 6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사적 녹음·녹화보상금(법 제 104 조의 2 제 1 항의 사적 녹음·녹화보상금이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액의 설정 또는 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할 때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문화청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2. 설정 또는 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적 녹음·녹화보상금액 및 그 산정의 기초가 되어야 할 사항
- 3. 법 제 104 조의 6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제조업자 등 단체의 의견을 들었을 때는 그 개요

제 22 조의 3 (보상금과 관련된 업무에 관한 업무규정의 기재사항)

시행령 제 57 조의 5 제 2 항의 업무규정으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사적 녹음·녹화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업무에 필요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
- 2. 문화청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적 녹음·녹화보상금액의 공시에 관한 사항

제 10 장의 2 도서관 등 공중송신보상금액의 인가 신청 등

第二十二條の四（図書館等公衆送信補償金の額の認可の申請）

法第百四條の十の二第一項に規定する指定管理団体（以下この章において「指定管理団体」という。）は、法第百四條の十の四第一項の規定により図書館等公衆送信補償金（法第百四條の十の二第一項の図書館等公衆送信補償金をいう。以下この章において同じ。）の額の設定又は変更の認可を受けようとするとき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た申請書に参考となる事項を記載した書類を添付して、文化庁長官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指定管理団体の名称及び住所並びに代表者の氏名
- 二 設定又は変更の認可を受けようとする図書館等公衆送信補償金の額及びその算定の基礎となるべき事項
- 三 法第百四條の十の四第三項の規定による図書館等を設置する者の団体からの意見聴取の概要（当該団体の名称及び代表者の氏名、当該意見聴取の年月日及び方法、当該団体から聴取した意見の内容並びに当該意見聴取の結果の図書館等公衆送信補償金の額への反映状況を含む。）

第二十二條の五（補償金関係業務に係る業務規程の記載事項等）

令第五十九條第二項の業務規程で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事項は、次に掲げるものとする。

- 一 図書館等公衆送信補償金を受ける権利を行使する業務に要する手数料（第三項第一号において「手数料」という。）に関する事項

제 22 조의 4（도서관 등 공중송신보상금액의 인가 신청）

법 제 104 조의 10 의 2 제 1 항에서 규정하는 지정 관리단체(이하 이 장에서 “지정 관리단체”라 한다)는 법 제 104 조의 10 의 4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관 등 공중송신보상금(법 제 104 조의 10 의 2 제 1 항의 도서관 등 공중송신보상금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액의 설정 또는 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할 때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청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지정 관리단체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2. 설정 또는 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도서관 등 공중송신보상금액 및 그 산정의 기초가 되어야 할 사항
- 3. 법 제 104 조의 10 의 4 제 3 항의 규정에 따른 도서관 등을 설치하는 자의 단체의 의견청취 개요(해당 단체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해당 의견청취 연월일 및 방법, 해당 단체로부터 청취한 의견의 내용과 해당 의견청취 결과를 도서관 등 공중송신보상금액에 반영한 상황을 포함한다)

제 22 조의 5（보상금과 관련된 업무에 관한 업무규정의 기재사항 등）

① 시행령 제 59 조제 2 항의 업무규정으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도서관 등 공중송신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업무에 필요한 수수료(제 3 항 제 1 호에서 “수수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

二 文化庁長官の認可を受けた図書館等公衆送信補償金の額及びその算定の基礎となるべき事項の公示に関する事項

2 法第百四条の十の五第二項の図書館等公衆送信補償金の分配に関する事項には、当該分配の方法の詳細（著作権者又は著作権隣接権者の不明その他の理由により図書館等公衆送信補償金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著作権者又は著作権隣接権者と連絡することができない場合における分配の方法を含む。）及びその決定の基礎となるべき事項を含むものとする。

3 指定管理団体は、法第百四条の十の五第一項の規定により同項の規程を届け出るとき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た書類（変更の場合にあつては、変更の内容及び理由を記載した書類）を添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手数料の算定の基礎となるべき事項

二 法第百四条の十の三第四号の補償金関係業務を的確に遂行するための体制の整備に関する事項

三 法第百四条の十の六第一項の事業の検討の状況及び令第六十一条の規定による学識経験者からの意見聴取の方法に関する事項

第十章の三 授業目的公衆送信補償金の額の認可申請等

第二十二條の六（授業目的公衆送信補償金の額の認可の申請）

法第百四条の十一第一項に規定する指定管理団体（以下この章において「指定管理団体」という。）は、法第百四条の十三第一項の規定により授業目的公衆送信補償金（法第百四条の十一第一項の授業目的公衆

2. 문화청장관의 인가를 받은 도서관 등 공중송신보상금액 및 그 산정의 기초가 되어야 할 사항의 공시에 관한 사항

② 법 제 104 조의 10 의 5 제 2 항의 도서관 등 공중송신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사항에는 해당 분배 방법의 세부내용(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도서관 등 공중송신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와 연락할 수 없는 경우의 분배 방법을 포함한다) 및 그 결정의 기초가 되어야 할 사항을 포함한다.

③ 지정 관리단체는 법 제 104 조의 10 의 5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항의 규정을 신고할 때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변경일 경우에는 변경 내용 및 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수수료 산정의 기초가 되어야 할 사항

2. 법 제 104 조의 10 의 3 제 4 호의 보상금과 관련된 업무를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한 체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법 제 104 조의 10 의 6 제 1 항의 사업 검토 상황 및 시행령 제 61 조의 규정에 따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제 10 장의 3 수업목적 공중송신보상금액의 인가 신청 등

제 22 조의 6 (수업목적 공중송신보상금액의 인가 신청)

법 제 104 조의 11 제 1 항에서 규정하는 지정 관리단체(이하 이 장에서 “지정 관리단체”라 한다)는 법 제 104 조의 13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수업목적 공중송신보상금(법 제 104 조의 11 제 1 항의 수업목적 공중송

送信補償金をいう。以下この章において同じ。) の額の設定又は変更の認可を受けようとするとき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た申請書に参考となる事項を記載した書類を添付して、文化庁長官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指定管理団体の名称及び住所並びに代表者の氏名

二 設定又は変更の認可を受けようとする授業目的公衆送信補償金の額及びその算定の基礎となるべき事項

三 法第百四条の十三第三項の規定による教育機関を設置する者の団体からの意見聴取の概要(当該団体の名称及び代表者の氏名、当該意見聴取の年月日及び方法、当該団体から聴取した意見の内容並びに当該意見聴取の結果の授業目的公衆送信補償金の額への反映状況を含む。)

第二十二條の七 (補償金関係業務に係る業務規程の記載事項等)

令第六十五條第二項の業務規程で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事項は、次に掲げるものとする。

一 授業目的公衆送信補償金を受ける権利を行使する業務に要する手数料(第三項第一号において「手数料」という。)に関する事項

二 文化庁長官の認可を受けた授業目的公衆送信補償金の額及びその算定の基礎となるべき事項の公示に関する事項

2 法第百四条の十四第二項の授業目的公衆送信補償金の分配に関する事項には、当該分配の方法の詳細(著作権者又は著作隣接権者の不明その他の理由により授業目的公衆送信補償金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著作権者又は著作隣接権者と連絡することがで

신보상금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액의 설정 또는 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할 때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청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 관리단체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설정 또는 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수업목적 공중송신보상금액 및 그 산정의 기초가 되어야 할 사항

3. 법 제 104 조의 13 제 3 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을 설치하는 자의 단체의 의견청취 개요(해당 단체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해당 의견청취의 연월일 및 방법, 해당 단체로부터 청취한 의견의 내용과 해당 의견청취 결과를 수업목적 공중송신보상금액에 반영한 상황을 포함한다)

제 22 조의 7 (보상금과 관련된 업무에 관한 업무규정의 기재사항 등)

① 시행령 제 65 조제 2 항의 업무규정으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업목적 공중송신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업무에 필요한 수수료(제 3 항제 1 호에서 “수수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문화청장관의 인가를 받은 수업목적 공중송신보상금액 및 그 산정의 기초가 되어야 할 사항의 공시에 관한 사항

② 법 제 104 조의 14 제 2 항의 수업목적 공중송신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사항으로는 해당 분배 방법의 세부내용(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수업목적 공중송신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와

きない場合における分配の方法を含む。)及びその決定の基礎となるべき事項を含むものとする。

3 指定管理団体は、法第百四条の十四第一項の規定により同項の規程を届け出るとき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た書類(変更の場合にあつては、変更の内容及び理由を記載した書類)を添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手数料の算定の基礎となるべき事項
- 二 法第百四条の十二第四号の補償金関係業務を的確に遂行するための体制の整備に関する事項
- 三 法第百四条の十五第一項の事業の検討の状況及び令第六十七条の規定による学識経験者からの意見聴取の方法に関する事項

第二十二条の八(著作権等の保護に関する事業等のために支出すべき授業目的公衆送信補償金の額の算出に用いる割合)

令第六十六条の文部科学省令で定める割合は、二割とする。

第十一章 印紙納付

第二十三条(印紙納付)

法第七十条第一項、第七十八条第五項(法第八十八条第二項及び第百四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及び第百七条の規定による手数料は、収入印紙をもつて納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十二章 ディスク等による手続

第二十四条(ディスク等による手続)

次に掲げる書類の提出については、電子的方法、磁気的方法その他の方法により当該書類に記載すべきこととされている事項を

연락할 수 없는 경우의 분배 방법을 포함한다) 및 그 결정의 기초가 되어야 할 사항을 포함한다.

③ 지정 관리단체는 법 제 104 조의 14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항의 규정을 신고할 때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변경일 경우에는 변경내용 및 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수수료 산정의 기초가 되어야 할 사항
2. 법 제 104 조의 12 제 4 호의 보상금과 관련된 업무를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한 체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법 제 104 조의 15 제 1 항의 사업 검토 상황 및 시행령 제 67 조의 규정에 따른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제 22 조의 8(저작권 등의 보호에 관한 사업 등을 위하여 지출하여야 할 수업목적 공중송신보상금액의 산출에 사용하는 비율)

시행령 제 66 조의 문부과학성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20 퍼센트로 한다.

제 11 장 인지 납부

제 23 조(인지 납부)

법 제 70 조제 1 항, 제 78 조제 5 항(법 제 88 조제 2 항 및 제 104 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107 조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 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12 장 디스크 등에 의한 절차

제 24 조(디스크 등에 의한 절차)

다음 서류의 제출은 전자적 방법, 자기적 방법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해당 서류에 기재

記録したディスクその他これに準ずるものを提出することによつて行うことができる。

一 法第百四条の七第一項、第百四条の十の五第一項及び第百四条の十四第一項の規定により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規程に係る書類並びに第二十二條の五第三項及び第二十二條の七第三項の規定により添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書類

二 令第五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事項に係る第三条第一項に定める書類及び同項の規定により当該書類に添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目録に係る書類

三 令第六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届け出る事項に係る書類

四 令第四十五条の三第一項及び第四十七条（令第五十七条の三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一項の規定により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業務規程に係る書類

五 令第四十五条の五第一項及び第二項並びに第四十九条（令第五十七条の三、第五十七条の九、第六十二条第二項及び第七十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以下同じ。）第一項及び第二項の規定により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事業計画及び収支予算に係る書類並びに令第四十五条の五第三項及び第四十九条第三項の規定により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事業報告書に係る書類

六 令第四十五条の八第一項及び第五十一条（令第五十七条の三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一項の規定により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事項に係る書類

七 令第五十七条の七第一項、第六十三条第一項及び第六十八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事項に係る書類

하기로 한 사항을 기록한 디스크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제출해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 104 조의 7 제 1 항, 제 104 조의 10의 5 제 1 항 및 제 104 조의 14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규정과 관련된 서류와 제 22 조의 5 제 3 항 및 제 22 조의 7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2. 시행령 제 5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과 관련된 제 3 조제 1 항에서 정하는 서류 및 같은 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서류에 첨부하여야 하는 목록과 관련된 서류

3. 시행령 제 6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사항과 관련된 서류

4. 시행령 제 45 조의 3 제 1 항 및 제 47 조(시행령 제 57 조의 3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업무규정과 관련된 서류

5. 시행령 제 45 조의 5 제 1 항 및 제 2 항과 제 49 조(시행령 제 57 조의 3, 제 57 조의 9, 제 62 조제 2 항 및 제 70 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과 관련된 서류와 시행령 제 45 조의 5 제 3 항 및 제 49 조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보고서와 관련된 서류

6. 시행령 제 45 조의 8 제 1 항 및 제 51 조(시행령 제 57 조의 3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과 관련된 서류

7. 시행령 제 57 조의 7 제 1 항, 제 63 조제 1 항 및 제 68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과 관련된 서류

八 第二十二條の二、第二十二條の四及び第二十二條の六の規定により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申請書に係る書類並びに同条の規定により添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参考となる事項を記載した書類

第十三章 インターネットを利用した情報の閲覧の用に供される電磁的記録

第二十五条

法第一百三十三条第四項の文部科学省令で定める電磁的記録は、HTMLその他の記号及びその体系で作成された電磁的記録で送信可能化されたものであつて、インターネットを利用した閲覧の際に、一の送信元識別符号によつて特定された一のページとして電子計算機の映像面に表示されることとなるものをいう。

8. 제 22 조의 2, 제 22 조의 4 및 제 22 조의 6 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와 관련된 서류와 같은 조의 규정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참고사항을 기록한 서류

제 13 장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의 열람용으로 사용되는 전자적 기록

제 25 조

법 제 113 조제 4 항의 문부과학성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기록은 HTML 이나 그 밖의 기호 및 그 체계로 작성된 전자적 기록으로 송신가능화된 것으로서, 인터넷을 이용해 열람할 때 하나의 송신처식별부호로 특정된 하나의 페이지로 컴퓨터의 영상면에 표시되는 것을 말한다.